

※ 기 공개된 내용을 제외하고 '가명정보 결합·반출'에 관한 내용만 수록

---

#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

---

2020. 9. 0.



개인정보보호위원회

# 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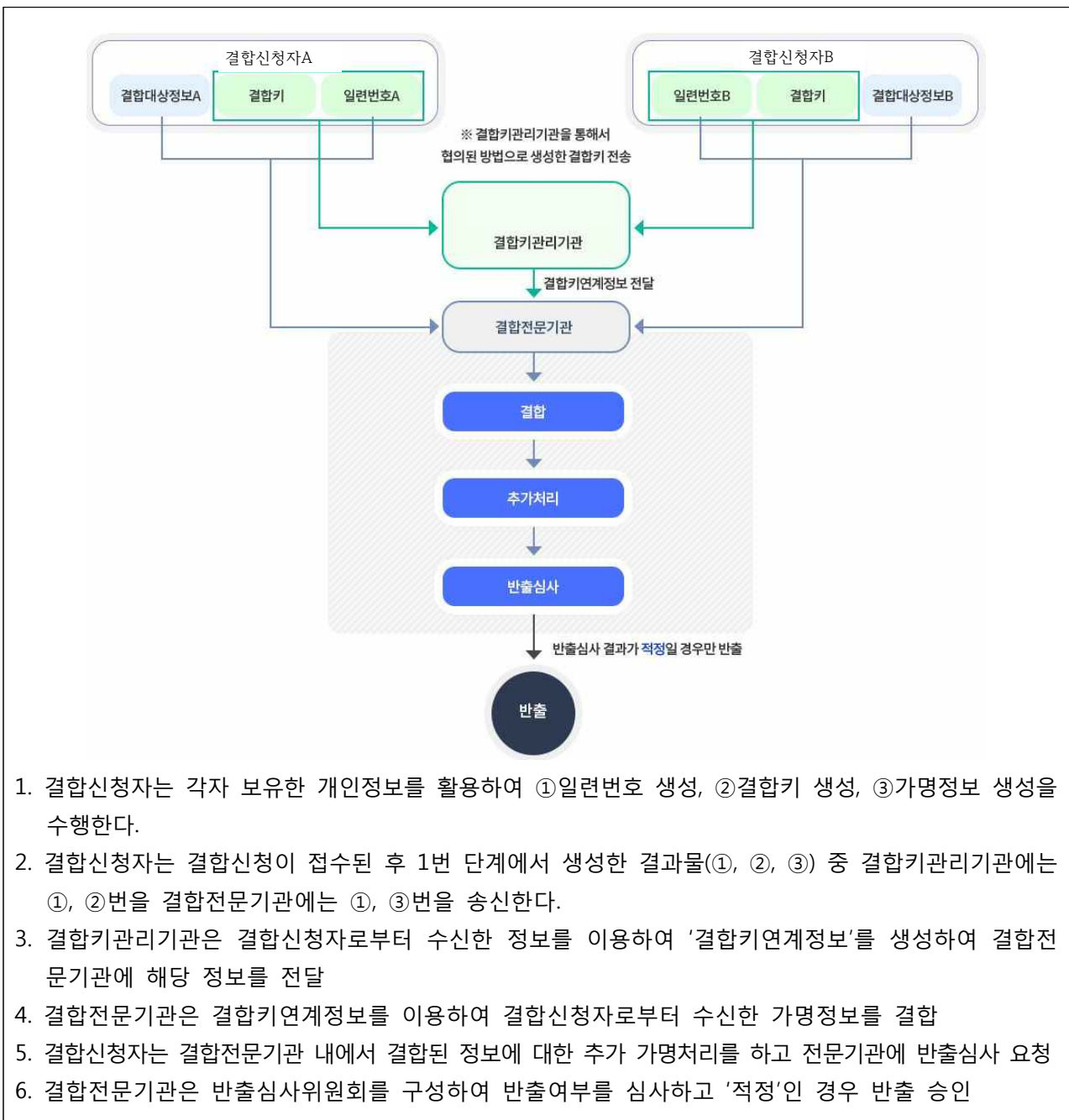
I. 추진 배경 .....	0
II. 가명정보 개요 .....	0
III. 가명처리 .....	0
1. 가명처리 절차 .....	0
2. 가명처리 세부절차 .....	00
IV. 가명정보 결합 .....	3
1. 가명정보 결합·반출절차 .....	3
2. 가명정보 결합·반출 세부절차 .....	5
V.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.....	00
1. 가명정보 관리적 보호조치 .....	00
2. 가명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.....	00
3. 가명정보 물리적 보호조치 .....	00
<참고 1> 개인정보 가명처리 기술 및 예시 .....	00
<참고 2> 특이정보 정의 및 처리사례 .....	00
<참고 3> 개인정보처리자 내부결합 절차 .....	00
<참고 4> 가명정보 시계열 결합 절차 .....	14
<참고 5> 결합신청서 작성 예시 .....	15

## IV 가명정보 결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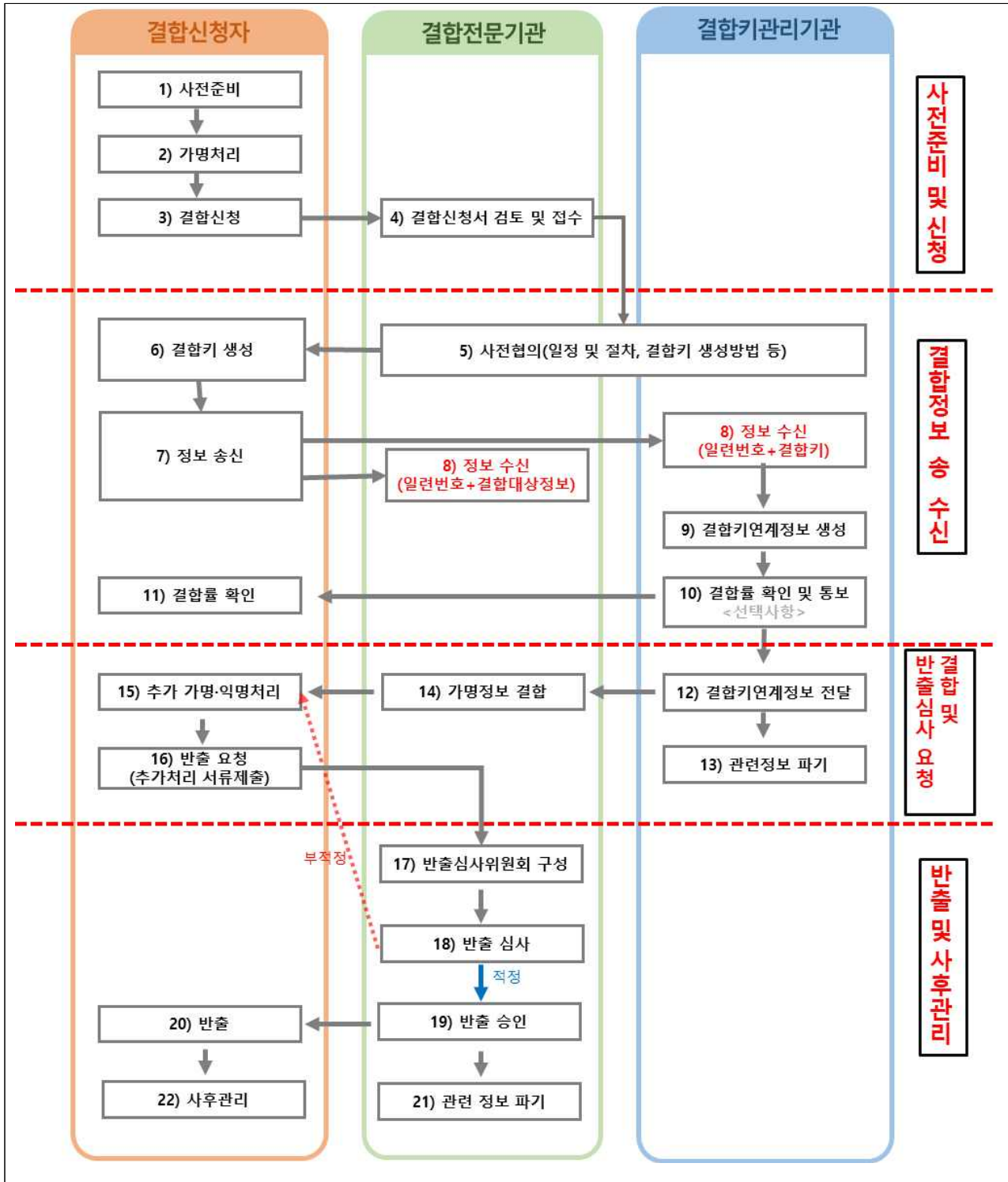
### 1 가명처리 결합·반출 절차

-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하며,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 짐

#### <가명정보 결합·반출 절차>



- 가명정보 결합 시 결합 수행에 대한 수행 주체(결합신청자, 결합관리기관, 결합전문기관)별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으며,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결합신청자 기준으로 세부절차를 안내함



※ 결합신청자는 가명정보 결합 절차를 진행하면서 세부 단계별로 생성되는 정보에 대한 무결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

## ② 가명정보 결합·반출 세부절차

- 결합신청자는 ①사전준비 및 결합신청, ②결합키 생성 및 정보 송신, ③추가처리 및 반출 요청, ④ 반출 및 사후관리의 총 4단계를 거쳐 가명정보 결합·반출을 수행할 수 있음

### <결합신청자 결합·반출 신청 절차>



(1단계) 결합신청자는 사전에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합신청에 필요한 가명처리를 수행하거나 결합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사전 준비를 수행하고, 결합전문기관에 결합 신청

(2단계)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과 결합 일정, 전송 방법 등을 협의 하고,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결합키 생성에 이용되는 정보를 수신 하여 결합키를 생성한 후 결합 관련 정보 송신\*

\* 결합전문기관(일련번호+결합대상정보), 결합키관리기관(일련번호+결합키)

※ 이때, 결합신청자는 결합키관리기관에게 사전결합률을 요청할 수 있음

(3단계) 결합신청자는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위해 결합전문기관 내에 설치된 별도의 공간\*에서 추가 가명처리 할 수 있으며, 결합전문기관에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반출심사를 위한 기초자료\*\*를 제출하여야 함

\*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목적으로 추가 가명·익명처리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

\*\* 추가 가명처리 시 적용한 가명·익명처리 기법, 수준 등에 관한 사항 등

(4단계) 결합신청자는 반출된 가명정보를 당초 결합을 신청한 목적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,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함

## 4-① 사전준비 및 결합신청

### 1 사전준비

- 결합신청자들은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 간의 협의\*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사전준비를 수행하여야 함

\* 협의사항 : 결합목적에 부합하는 가명정보 선정, 시계열 결합 여부, 결합률 확인 여부, 결합키 생성항목,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가명처리 수준 등

- 결합신청자들은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결합키를 생성할 때 활용할 항목을 결정하여야 함

○ 결합키 생성 항목 정의(예시)

- A사 : 성명,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, 주소, 차량 정보, 보유수, 주유금액 등
- B사 : 성명,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, 주소, 주거형태, 보증금 유무, 월세 여부 등

⇒ A, B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**성명,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**을 결합키 항목으로 선정

- 결합신청자는 필요시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별도의 내부승인절차 등을 이행할 수 있음

### 2 가명처리

- 결합신청자는 가명처리 대상 정보에 정보주체별로 중복되지 않는 **일련의 값(일련번호)**을 생성하여야 함

[일련번호 생성방법(예시)]

신청기관A					신청기관B				
일련번호	성명	휴대전화번호	생년월일	...	일련번호	성명	휴대전화번호	생년월일	...
A1	강감찬	090-4562-7895	1947	...	B1	유관순	090-4567-9876	1982	...
A2	권율	090-7854-5689	1975	...	B2	권율	090-7854-5689	1975	...
A3	유관순	090-4567-9876	1982	...	B3	강감찬	090-4562-7895	1947	...
...	...	...	...	...	...	...	...	...	...

○ 결합신청자는 **결합키 생성을 위한 항목\***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에 대해 가명처리를 수행하여야 함

\* 결합키는 결합신청 후 '결합키관리기관'과 협의하여 생성해야하므로 결합키 생성을 위해 사용되는 항목은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

○ 결합신청자가 보유한 개인정보파일 (예시)

- A사 : (성명,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), 주소, 차량 정보, 보유수, 주유금액 등
- B사 : (성명,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), 주소, 주거형태, 보증금 유무, 월세 여부 등

○ 결합신청서 작성 전 처리되어야 할 가명처리 대상 항목

- A사는 **주소, 차량 정보, 보유수, 주유금액** 등이, B사는 **주소, 주거형태, 보증금 유무, 월세 여부** 등이 가명처리 대상

\* 가명처리 대상 중 분석목적에 필요하며, 개인식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항목인 경우 처리대상에서 제외 가능

※ 성명,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은 결합키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므로, [1단계. 사전준비]단계에서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않음

- 가명처리 시 [Ⅲ-② 가명처리](p.00)의 내부 활용·제공\*에 관한 사항을 참조할 수 있음

\* 결합된 가명정보를 반출하는 자(예시:총 3개의 결합신청자 중 반출하여 활용하는 자는 1인일수도 있음)의 처리 목적 및 처리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명처리 할 수 있음

- 결합신청자는 가명처리 수행에 대한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함

### 3 결합신청

- (신청서 작성) 결합신청자는 [별지제3호서식]결합신청서\*를 각자 작성하고,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할 첨부서류를 함께 준비하여야 함

\* 결합신청서 작성 방법은 '<참고5>결합신청서 작성 예시' 참조

- 결합신청

- 결합신청자는 소관분야의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'가명정보 결합 종합 지원 시스템'을 통해 결합신청 수행
- 결합전문기관 선정 시 결합에 사용될 가명정보의 속성, 결합 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, 소관분야의 전문기관이 없는 경우 다른 분야의 결합전문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을 할 수 있음

\*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은 데이터의 크기와 결합전문기관에 신청되어 있는 다른 결합작업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- 신청서류 보완

- 결합전문기관이 결합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부족한 서류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
-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의 가명처리 수준에 대하여 권고하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



## 4-② 결합키 생성 및 정보전달

### 1 결합키 생성

- 결합신청자는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결합키를 생성하여야 하며, 결합키 생성에 필요한 사항\* 및 결합에 관련된 사항\*\*을 결합키관리 기관 및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함

\* (결합키관리기관)결합키 생성에 이용되는 salt값 및 생성에 관한 기술지원, 사전 결합률 확인여부 등

\*\* (결합전문기관)결합일정 및 절차, 전송 파일 형태 등 결합에 필요한 사항

- (결합키 생성) 결합키는 사전준비 단계에서 결합신청자간 합의한 항목과 결합키전문기관과 협의한 사항(salt값 등)을 적용하여 생성

#### [결합키 생성방법(예시)]

'홍길동' + '01012345678' + '생년월일' + 'abc123' (성명/전화번호/생년월일/Salt값)

결합키 생성 알고리즘(SHA256 등)

'a9fe0r . . . sr13'

- 결합을 위한 식별정보의 가명처리에 사용하는 기법은 일반적으로 일방향 암호화를 사용
- 일방향 암호화를 사용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가 가명정보의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2020년 기준으로 일방향 암호화 기법 중 SHA2-512에 Salt를 포함하여 사용하거나 HMAC-SHA2알고리즘을 이용할 것을 권고함
- Salt의 길이는 Hash처리 결과 값의 크기와 동일한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함

\* 출처 : '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', KISA

[성명,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결합키를 생성하는 예시]



신청기관A



신청기관B

일련번호	결합키	성명	휴대전화번호	생년월일
A1	9A0... A5DDF	<del>강감찬</del>	<del>000-4562-7895</del>	<del>1947</del>
A2	C2E... 7067C	<del>권을</del>	<del>000-7854-5689</del>	<del>1975</del>
A3	DAC... 387EA	<del>유관순</del>	<del>000-4567-9876</del>	<del>1982</del>
...	...	...	...	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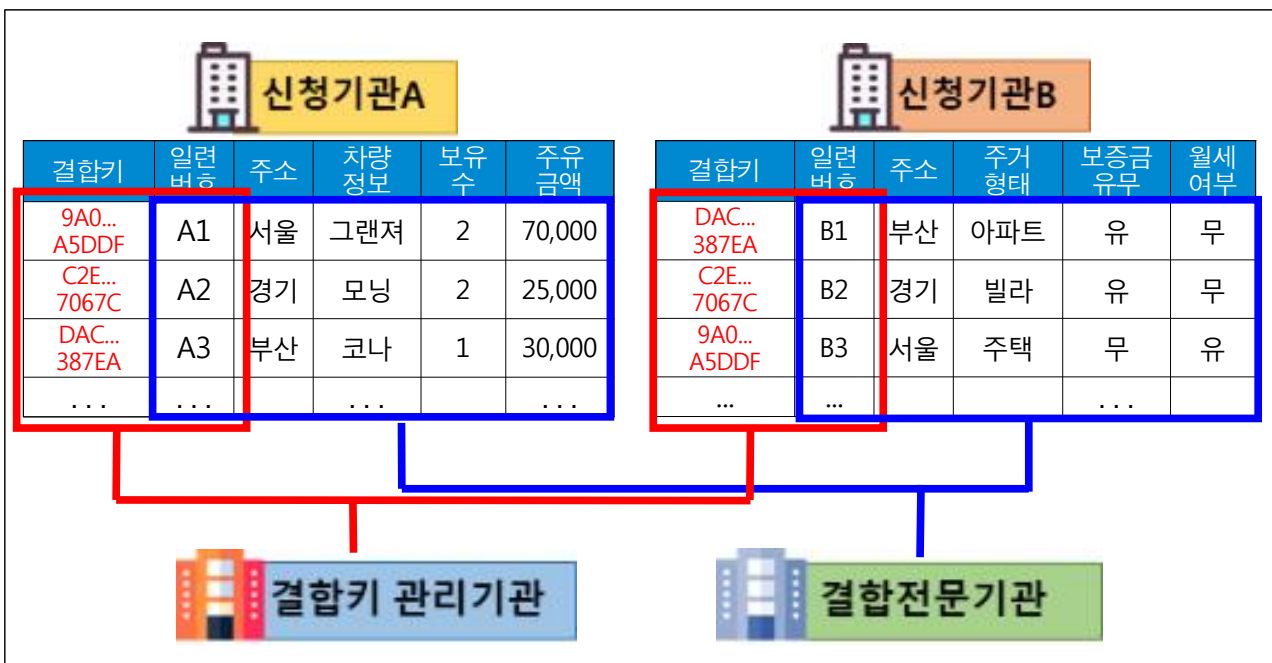
일련번호	결합키	성명	휴대전화번호	생년월일
B1	DAC... 387EA	<del>유관순</del>	<del>000-4567-9876</del>	<del>1982</del>
B2	C2E... 7067C	<del>권을</del>	<del>000-7854-5689</del>	<del>1975</del>
B3	9A0... A5DDF	<del>강감찬</del>	<del>000-4562-7895</del>	<del>1947</del>
...	...	...	...	...

[참고]

- 결합키 생성 전에 암호화대상 정보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
- 동일한 결합키가 생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자 동일한 데이터에 동일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 처리 후 결과 값을 확인하여야 함
- \* 한글의 경우 EUC-KR로 인코딩 된 데이터와 UTF-8로 인코딩 된 데이터를 동일한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는 경우 서로 다른 결과 값이 생성될 수 있음

2 정보전달

- 결합신청자는 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전문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
  - '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 시스템'을 통해 결합키관리기관에 "결합키+일련번호" 전송
  - 결합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전송방법을 활용하여 결합전문기관에 "결합대상정보+일련번호" 전송
  - \* 대용량의 데이터는 가급적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며, 결합전문기관별 전송방법이 다를 수 있음



- 결합신청자는 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압축하여 암호화한 뒤 결합키 관리기관 및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함
- \*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송·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, 압축 및 암호화, 무결성 검증 등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함

※ 데이터 전송 시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하는 방법(예시)

- ① 결합키관리기관,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가명정보 전송 시 전송대상 파일에 대한 해시값을 생성하여 함께 보내 전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무결성 검증
- ② 데이터 전송 전 전체 데이터를 확인하여 파일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한 후 전달
  - \* 전체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경우 앞부분의 10줄과 가장 마지막의 10줄을 확인하여 오류가 없을 때 전송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

### 3 결합률 확인

- 결합신청자가 결합키관리기관과의 협의 단계에서 사전결합률 확인을 요청한 경우,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키연계정보 생성과정에서 결합률을 확인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보
- 결합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결합키를 재생성 할 수 있음
  - 결합키에 문제(결합률 0% 등)가 있다고 판단하거나, 효율성이 높은 결합결과물 생성을 위해 결합키 생성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 등
- 단순히 결합키 생성 항목만 변경하는 경우 결합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, 결합신청 내용의 변경(결합 목적, 항목수, 레코드 수 등)이 있는 경우 결합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
  - 결합키 생성 항목에서 제외된 항목을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포함하는 경우, 해당 항목에 대한 가명처리를 수행하여야 함

## 4-③ 추가처리 및 반출심사 요청

### 1 추가처리

- 결합신청자는 결합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의 내에 설치된 별도의 공간에서 반출을 위한 추가 가명처리\*를 하여야 하며, 결합전문기관에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
  - \* 결합된 정보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도록 추가 가명·익명처리 수행
- 이때, 추가 가명처리를 할 수 있는 자는 결합신청자 중에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자로 제한됨
- 반출심사는 결합된 정보를 반출할 자의 처리 목적과 처리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, 추가처리 시 가명처리 수준은 결합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처리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
- 익명정보로도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, 익명처리\*하여 반출하여야 함
  - \* 시간·비용·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

### 2 결합정보 반출심사 요청

- 결합신청자는 반출을 위한 추가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결합전문기관에 반출을 요청할 수 있음
  - 반출심사는 결합신청자별로 이루어지므로 추가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결합전문기관에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
  - 반출 요청 시 추가 가명·익명 처리에 관한 내역\*을 제출하여야 함
    - \* 추가 가명처리 시 적용한 가명·익명처리 기법, 수준 등에 관한 사항 등
- 결합전문기관이 반출요청을 받은 경우,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출심사를 진행함
  - 결합신청자가 반출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반출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된 내용을 반출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\*하여야 함
    - \* 결합된 정보의 활용 목적에 따른 가명처리 적용 기준 등

- 결합신청자가 결합에 사용된 가명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, 해당 정보와의 결합가능성 등이 반출승인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음
- 반출심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,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 내에 설치된 별도의 공간에서 추가 가명·익명처리를 하여야 함
  - 이 경우에도 반출승인을 위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자문 등 필요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음

## 4-④ 반출 및 사후관리

### 1 반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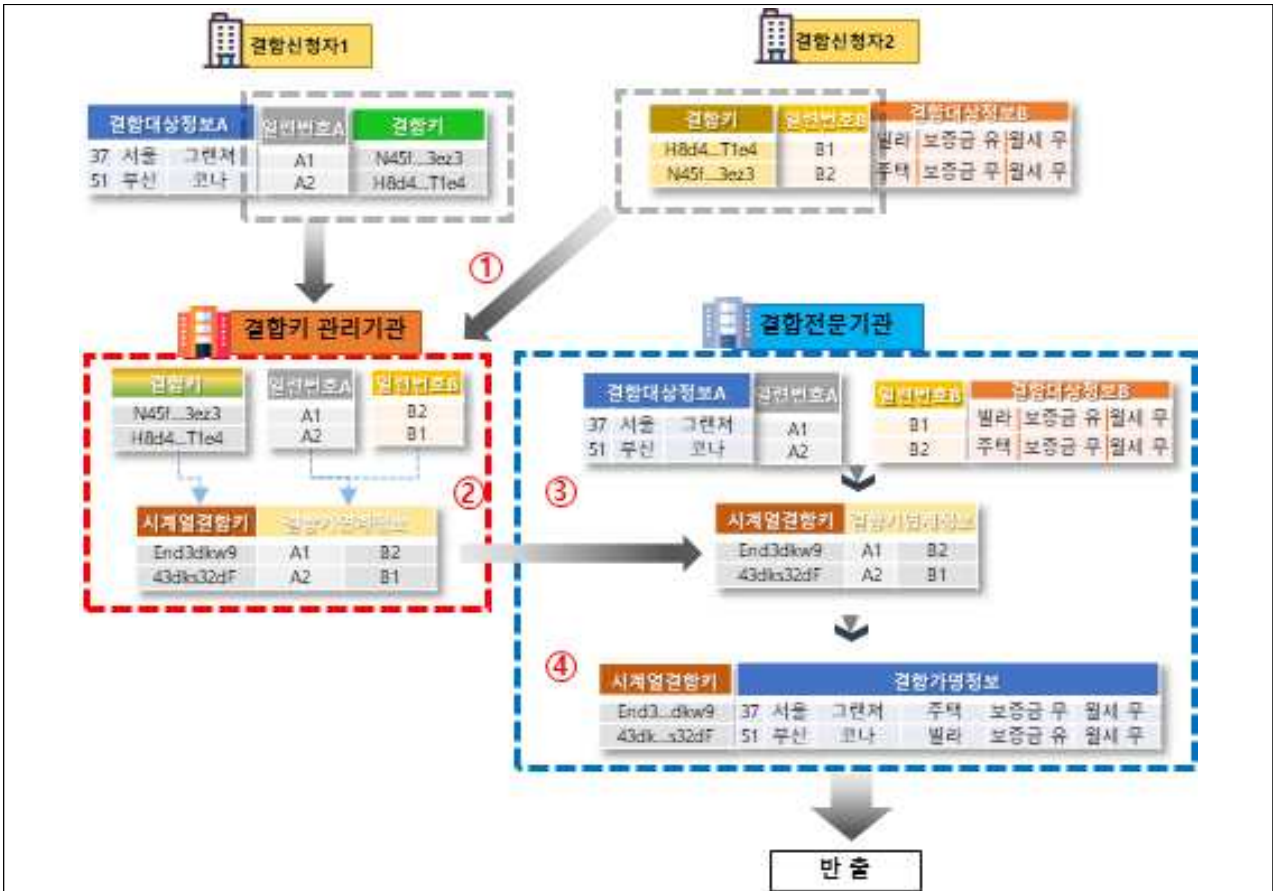
-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반출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과 반출방법을 협의하여 승인된 정보를 반출할 수 있음
-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에 결합 및 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

### 2 사후관리

- 결합신청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결합데이터의 재식별 또는 재결합 시도 및 결합 목적 외의 활용을 해서는 안 됨
  - 단, 시계열결합을 신청하여 시계열결합키를 포함한 정보를 반출한 경우, 이전에 반출한 시계열 반출정보와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음
    - \* 시계열정보 간 결합을 수행할 때마다 재식별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, 필요시 시계열 정보 전체에 대하여 추가 가명처리 수행
- 결합신청자는 반출한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V.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따른 보호조치를 준수하여야 함

## 참고 4

## 가명정보 시계열 결합 절차



- ① 각 결합신청자는 결합대상정보의 정보주체에 대한 일련번호를 생성하고, 결합키관리기관과 합의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결합키를 생성
  - 생성한 결합키와 일련번호는 결합키전문기관으로 송신
- ② 결합키관리기관은 각 결합신청자로부터 수신받은 결합키를 활용하여 1)시계열 결합키와 2)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
  - ※ 일반적인 결합의 경우 시계열 결합키를 생성하지 않음
- ③ 결합키관리기관에서 생성한 1), 2)의 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송신하고, 결합전문기관은 수신받은 2)를 활용하여 각 결합신청자의 가명정보를 결합
- ④ 결합전문기관은 결합된 가명정보에 1)을 포함하여 반출하고, 결합신청자는 반출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이행

**<추가 시계열 결합 신청 및 활용 방법>** 결합신청자가 시계열 결합을 신청한 경우, 그에 적합한 결합키 생성방법을 결합키관리기관에서 정해주며, 결합신청자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결합키를 생성하여 결합키관리기관에 전달하고, 추가로 결합한 반출정보에 포함된 '시계열 결합키'를 활용하여 내부에서 연계하여 활용

※ 최종 시계열 결합 시 종료에 대한 안내를 결합키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결합키관리기관은 해당 결합 후 보관하고 있는 시계열결합키 생성방법을 삭제

## 참고 5

## 결합신청서 작성 예시

신청서구분	작성 방법
신청번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일한 가명정보 결합을 식별*하기 위해 각 결합신청자간 합의한 임의의 신청번호**를 동일하게 작성</li> <li>* 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은 결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</li> <li>** (예시)대표신청자+신청일자+일련번호+전체신청자 수 ⇒ AAA-20200805-001-3</li> </ul>
결합 신청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결합신청자의 일반사항을 작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관명,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, 주소, 대표자명, 담당자, 연락처, 신청자 구분</li> </ul> </li> </ul>
가명정보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결합대상 가명정보의 정보를 작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파일명, 제공방법, 제출예정일, 전체 가명정보 제공 기관명(총수), 제공정보 요약(전체 항목 수, 전체 레코드 수, 전체 파일 크기)</li> </ul> </li> <li>※ 가명정보를 결합 시 제공하지 않지만 결합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[해당없음] 표시</li> </ul>
결합 결과물 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결합 결과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작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시계열분석) 시계열분석의 경우 해당사항 작성</li> <li>※ 추가 시계열 분석의 경우, 신규 시계열 분석 시 발급된 결합접수번호를 함께 기재</li> <li>- (결합목적) 결합 가명정보 처리 목적에 해당사항 작성</li> <li>- (세부결합목적) 결합 가명정보를 활용하려는 세부내용에 대한 요약</li> <li>※ 가명정보 결합에 제공하지만 결합 결과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[해당없음] 표시</li> </ul> </li> </ul>
첨부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 등본 등</li> <li>○ <b>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</b>(전체 항목명, 가명처리 대상 항목명 및 포함내용, 가명처리 기법 및 예시* 등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[III-②] 가명처리 절차內 ‘가명처리 수준표’ 참조(p.00)</li> </ul> </li> <li>○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연구계획서, 제안서 등)</li> <li>○ 안전조치계획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</li> </ul>



<예시> 개인정보처리자 □□□(개인), A사와 B사가 신청하는 경우

□ 개인정보처리자 □□□(개인)의 신청서(예시)

**결합 신청서**

신청번호	A-202009 00-001-3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결합신청자			
기관명	해당없음	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	1900-00-00 * 생년월일 기재
주소	○○시 ○○구 ○○○	대표자명	해당없음
담당자	□ □ □	담당자 연락처 (전화, e-mail)	010-0000-0000 abc@0000.00.00
신청자 구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개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공공기관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영리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기관		

가명정보 제공	해당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파일명	2019년도_종합		
제공방법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온라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오프라인		
제출예정일	2020 년    9 월    00 일		
전체 가명정보 제공 기관명(총수)	총 2개 : □□□(2019년도_종합), A사(파일명1) ※ 결합신청자 B사는 별도의 가명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활용만 함		
제공정보 요약	컬럼 수	25개	
	전체 레코드 수	10,500개	
	전체 파일 크기	00mb	

결합 결과물 이용	해당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-----------	--

시계열 분석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시계열(신규) <input type="checkbox"/> 시계열(추가, 결합접수번호 :    )		
결합목적	<input type="checkbox"/> 통계작성 <input type="checkbox"/> 과학적 연구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익적 기록보존 등		
세부결합목적			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합을 위하여 결합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20 년    9 월    00 일

신청인    □ □ □ (서명 또는 인)

**결합전문기관의 장**    귀하

첨부 서류	1.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1부 2.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(전체 항목명 가명처리 대상 항목명, 가명처리 기법 및 예시 등) 1부(해당 경우에 한함) * 결합키 생성에 사용된 속성 제외 3.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. 안전조치계획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
----------	---



□ A사의 신청서(예시)

## 결합 신청서

신청번호	A-202009 00-001-3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결합신청자			
기관명	A사	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	000-00-00000
주소	○○시 ○○구 ○○○	대표자명	○○○
담당자	◎ ◎ ◎	담당자 연락처 (전화, e-mail)	010-0000-0000 def@oooo.oo.oo
신청자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공공기관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영리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기관		

가명정보 제공		해당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
파일명	파일1	
제공방법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온라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오프라인	
제출예정일	2020 년    9 월    00 일	
전체 가명정보 제공 기관명(총수)	총 2개 : □□□(2019년도_종합), A사(파일명1) ※ 결합신청자 B사는 별도의 가명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활용만 함	
제공정보 요약	컬럼 수	30개
	전체 레코드 수	20,000개
	전체 파일 크기	00mb

결합 결과물 이용		해당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
시계열 분석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시계열(신규) <input type="checkbox"/> 시계열(추가, 결합접수번호 :    )	
결합목적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통계작성 <input type="checkbox"/> 과학적 연구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익적 기록보존 등	
세부결합목적	(구체적 목적 설명)	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합을 위하여 결합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20 년    9 월    00 일

신청인    ○ ○ ○ (서명 또는 인)

**결합전문기관의 장**    귀하

첨부 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1부</li> <li>2.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(전체 항목명 가명처리 대상 항목명, 가명처리 기법 및 예시 등) 1부(해당 경우에 한함) * 결합키 생성에 사용된 속성 제외</li> <li>3.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</li> <li>4. 안전조치계획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</li> </ol>
----------	--

